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4146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20.
3.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

이크 범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우선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 ----- ----- ----- ----- ----- ----.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제25조의2제1항)¹⁾,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1)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할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 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시 후 지체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4. 10. 16. 개정되어 2025. 4. 17. 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개정안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임.

<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시행예정법률
<신설>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u>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u> <u>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u>
--	--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긴급신분비공개수사 조항이 신설됨('24.10.16. 개정, '25.4.17. 시행)에 따라 본 개정안은 입법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